

평생교육법

[일부개정 2001.1.29 법률 제6400호]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평생교육"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2. "평생교육단체"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3. "평생교육시설"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4조 (평생교육의 이념)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.
 ③평생교육은 정치적·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.
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등) 평생교육의 과정·방법·시간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,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공공시설의 이용)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제7조 (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) 국가·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·교육비·연구비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 (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

제9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·평생교육사의 양성·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평생교육협의회) ①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·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.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 (경비보조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지도 및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□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현황

- 위 치 : 의정부시 가능동 신흥로 365 병진빌딩 5,6층
- 규 모 : 289.27㎡(4층 129.6/5층 129.6/6층 30.07) [총87평]
- 지원근거 : 평생교육법 제9조, 제11조, 제12조
- 과거 지원 내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천원)	지 원 내 용	비 고
2003. 11. -2013. 11.	220,000	전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지원	도비 50%, 시비50%
2003. 12.	80,000	학습관 시설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지원	

○ 지원현황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비 고
임대지원		
보증금	220,000	2003년 이후 매 2년 재계약
임차료	$1,265 \times 12 = 15,180$	부가세 포함, 매월 지급 2013년 12월 이후 월세로 계약변경
화재보험	500	2004년 이후 매년 갱신

○ 일반현황

- 총학생수 : 2,700여명
- ※ 주 이용학생수 : 일 40~50명 이용
- 시설이용 : 4층(강의실 및 학생회사무실/ 대강당) / 5층(스터디룸5/컴퓨터실1)
- 학생회 운영 : 회장 박재홍, 부회장 2, 국장 2

□ 검토사항

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이 되어 임대인의 임차료 상승 요청

○ 임대인 요구사항

- 보증금 : 현행유지(220,000,000원)
- 임차료 : 1,265,000원 → 1,870,000원(605,000원, 47.8% 인상, 부가세)
- ※ 추가 소요예산액 : $605,000\text{원} \times 12\text{월} = 7,260,000\text{원}$

- 제 1 안 - 현 보증금 및 임차료 수준에서 현 수준 혹은 규모를 축소하여 타지역으로 학습
- 제 2 안 - 현 위치에서 계약변경(임차료 상승)을 통한 제임대

부동산 임대차(월세) 계약서

※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

1. 부동산의 표시

소재지	경기도 의정부시 가동동 648-8 (신흥로 365)			
토지	지목	대지	면적	216.1
건물	구조	철근콘크리트	용도	근린생활시설
임대부분	건물4~5층 전체		임대(공용포함) 총 면적	292.87㎡(약88.6평)

2. 계약내용

제1조)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과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보증금	금일금이억이천만 원정 (₩220,000,000)	
계약금	금 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. 영수자 : 박재두	
중도금	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,	
잔금	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.	
차임	금일백사십오만(₩1,450,000) 원정은 매월 (10 일)에 (후불)로 지불한다.	

제2조) (효력발생)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불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.

제3조) (존속기간)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년 12 월 10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,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년 12 월 09 일까지 (24) 개월로 한다.

제4조) (용도변경 및 전대등)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,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,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) (계약해지)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거나, 제4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) (계약종료)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,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.

제7조) (계약해제)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)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<특약사항>

1. 현 시설 상태로의 계약이며 계약금 및 보증금은 전 임대인으로부터 승계한 금액으로 한다.
2. 본 특약에 우선하고 그 이하에서 위에 적시하는 일반 약관의 조항 전부를 특약으로 하고 계약 체결한다.
3. 관리금, 시설비등을 임대인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.
4. 도난, 증수해해, 화재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, 임차인의 행정처분, 벌금 등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그 손해를 임차인은 즉시 배상키로 한다.
5.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비 등과 임차료 부가비용등 기타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.
6. 관리비는 임대(공용포함) 총 면적으로 부과하고, 공용부분(승강기, 소방, 정화조 외)등의 시설물을 유지, 보수하는 비용으로 동 건물의 임차인들과 안분 부담하기로 한다. (관리비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.)
7. 건물관리는 범진 빌딩 관리 관행에 일체 따르며 관리비와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, 관리비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8. 임대인이 수수할 계좌번호 : 임대료 (우리은행 : 1005-902-373893, 박재두) 관리비 (새마을 금고 : 9002-1614-3573-6, 박재두)
9. 본 계약은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상의 임차권(전세권)설정 등기는 임대차 만료시까지 유지하기로 함.
10. 기타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함.

※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, 날인 후 임대인, 임차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5 년 12 월 일

임대인	주소	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17 민락e-편한세상아파트				
	주민등록번호		전화	010-7339-	성명	박재두
	대리인	주민번호	전화		성명	
임차인	주소	경기도 의정부시 326-2 의정부시청				
	주민등록번호	127-83-00026	전화	031-828-8813	성명	의정부시장 (인)
공동명의인	주민등록번호		전화		성명	(인)
중개업자	사무소소재지					
	사무소명칭			대표자성명		
	등록번호		전화		소속중개업자	(인)